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53호

‘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’ 규제특례 승인 공고

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제11조의4 제2항 및 「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」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,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3일

산업통상부장관

확인서-799-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사단법인 대한엘피지협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4-82-07711
	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(방배동, 청진빌딩 5층 501호)		
	대표자 이호중	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실증총괄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상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봄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799-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(주) 청해진주유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797-87-01574
	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93		
	대표자 김종수	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6곳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성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용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799-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3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신일충전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9-56-00499
	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885(홍제동)		
	대표자 신광욱	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성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용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799-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3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신일충전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9-56-00499
	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885(홍제동)		
	대표자 신광욱	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성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용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799-4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
신청인

이름(회사명) 미래LPG충전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449-22-01846
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983(신용동)	
대표자 정일호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4곳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성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용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799-5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799-5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
신청인

이름(회사명) 에스케이(SK)지산 LPG충전소	**사업자(법인)등록번호** 598-21-00647
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523(지산동)	
대표자 설동열	

확인내용

명칭 농어촌·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

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*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,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①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, 제6조,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5조, 제51조, 별표4

②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1조,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

③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1조

구역 전라남도 10곳, 경상북도 3곳,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

< 실증사업 예정지 >

No.	사업부지 후보	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	실증총괄
1	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-2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대한엘피지협회
2	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30-2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3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4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-1 일원	미래LPG충전소	
5	전남 완도군 고금면 동성리 471-3 일원	미래LPG충전소	
6	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	미래LPG충전소	
7	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8	전남 강진군 칠량면 용로리 173-3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9	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484-1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0	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-7 일원	㈜청해진주유소	
11	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582-7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2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53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3	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68-3 일원	에스케이(SK)지산LPG충전소	
14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-4 일원	신일충전소	
15	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-8 일원	신일충전소	
16	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-1 일원	신일충전소	

기간 2년

규모 실증구역과 동일

조건

□ **(안전성 확보)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**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**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**

○ LPG충전사업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(변경허가, 기술검토, 완성검사 등)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

① **실증특례 신청사업자**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적합한 허가**를 받을 것

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·기술기준을 토대로 **간이충전소 여건**에 **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**을 **마련**하여 **실증기준안**에 **포함**할 것

③ **자체 안전성평가**를 **실시**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**을 **수립**하여 **준수**할 것

*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·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

□ **(안전성 검증) 업계·학계·유관기관**(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) **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관리위원회**를 **구성**하여 실증사업의 **안전성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00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0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파이온일렉트릭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51-86-00038
	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, 에이동 1801호(일직동)		
	대표자 윤광희		

확인내용

명칭 주유소 내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

주요내용 주유소 부지 내 ESS(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)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을 실증하는 서비스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, 별표13, 「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」 제110조

구역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69 주유소 1곳

기간 2년

규모 주유소 내 ESS를 포함한 전력안정화시스템 2기(도합 500kVA), 태양광발전 설비, 전기차충전기

조건

○ '주유취급소' 및 'ESS' **상호간의 예견되는 위해성**에 대해 **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**하고 **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 선행**

○ **산·학·연·관 전문가**의 **안전기준 적정성 검증** 후 해당 **안전기준을 반영한 실증사업 추진** 필요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0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에이치디하이드로젠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279-81-03617
	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, 14층		
	대표자 김성준		

확인내용

명칭 연료전지의 사용전검사 완료 전 발생 전력의 자가사용

주요내용

연료전지의 사용전검사 완료 전 발생 전력의 공장 내 자가사용을 통한 효율성 및 안전성 실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 가능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 제1항~제2항, 제9조
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제1항, 제63조

구역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 156번길 82, 에이치디하이드로젠 포승 공장

기간 2년

규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285kW급 2기

조건

□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연료전지 설비는 사용하기 전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해야 함

○ 한편,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1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시운전 등 용도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적 가동 가능

- 다만, 생산된 전력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 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* 등을 준수하여 사용
 * 사용전원(저압), 발전용량(10,000kW 미만), 역송전·단독운전방지 등

○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실증지표를 준수하여 사용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검토의견)**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연료전지 설비는 사용하기 전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해야 함

○ 한편,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1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시운전 등 용도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적 가동 가능

- 다만, 생산된 전력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* 등을 준수하여 사용

* 사용전원(저압), 발전용량(10,000kW 미만), 역송전·단독운전방지 등

○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실증지표를 준수하여 사용

[실증 목표(안)]

발췌 번호	대상	지표명	단위	최종 실증목표	객관적 측정 방법	데이터 수집 방법
①	**연료전지-로드뱅크-계통**	전력 수치 일치	%	≥ 95%	연료전지 발전량 = 로드뱅크 소비전력량 + 소내전력량	전력량 로그 수집
②	**계통 연계점 (PCC)**	계통 유출 방지	kW	0 kW	전력계로 순시 유출 전력 측정, 평균·최대 편차 산출	전력량 로그 수집

확인서-80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한국수자원공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06-82-00471
	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		
	대표자 윤석대		

확인내용

명칭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

주요내용

수상 태양광발전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유식 수상 전기실 및 전력변환 장치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부유식 수상전기실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세부 규정 및 기준 부재
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, 제63조,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 [별표5]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,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4]

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2-4 (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부지)

기간 2년

규모 부유식 수상 전기실 2종 및 SST 전력변환 장치 1기

조건

□ 해당설비 실증 시 검사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사용전검사 처리 가능

□ 향후, 부유식 구조물의 중량이 증가하는 등 부유식 수상전기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“선박안전법 시행규칙” 제3조에 따른 ‘부유식 해상구조물’과 동등한 시험 및 인증 등으로 통한 부유체 안전성 검증 필요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ㅇ 현재,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 및 SST* 전력변환 장치와 **유사 설비가 없어** 사용전검사 시 **준용 가능한 검사기준**은 **없는 실정**

* 전력반도체 적용을 통해 변압과 동시에 직류(DC)-교류(AC) 변환이 가능한 장치

ㅇ 다만, 해당설비 실증 시 **검사기관**의 **안전상 요구사항**을 **준수**할 경우 **사용전검사 처리 가능**

< 안전상 요구사항(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) >

ㅇ **(설치조건) 제방 또는 댐 내측 공유수면에만 설치**해야 하며, **사용전 안전을 확보**(부유체 파손 전기실 전복 및 전기설비 사고방지 등)하고 **다음 사항을 준수**

❶ **(안전기준 준용) 전기설비** 설치에 대한 기준 **'전기설비 기술기준'**, **'한국전기설비규정'** 및 '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의한 고시'에 따른 **'전기설비 검사·점검기준'** 등에서 정하는 **설치기준 및 진동, 충격, 부식 등에 대한 기존 안전기준 준수**

❷ **(추가 기준적용) 부유체 및 계류장치**는 해수부 고시 **'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, 설비,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'**을 **준용**하여 **부유식 해상구조물(전기실) 안전성 검증**

❸ **(추가 안전확보) 인입 전선로**는 **수중 전용케이블 사용**

❹ **(사고대책마련) 부유식 구조물 침몰**(파손) 및 **발·변전설비 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**, 인축의 **감전방지 대책**, **사고대처 및 후속 안전조치** 등에 대한 **매뉴얼 작성** 및 **비상연락망 구축**

❺ **(성능평가 강화)** 부유식 전기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**성능 평가항목 강화**

❻ **(추가 허가조건)** 태풍, 강풍 등에 의해 부유식 **해상 전기실이 파손될 경우 실증특례 종료**

❼ **(위험표시)** 선박의 충돌, 전기안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관청에서 발전소 설치를 허가받은 **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를 한 부표설치**

□ 기타 의견

ㅇ 향후, 부유식 **구조물**의 **중량**이 **증가**하는 등 **부유식 수상전기실**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

ㅇ "선박안전법 시행규칙" 제3조에 따른 **'부유식 해상구조물'**과 동등한 **시험 및 인증** 등으로 통한 **부유체 안전성 검증** 필요

확인서-803-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3-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한국자동차연구원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12-82-04676
	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		
	대표자 진종욱		

확인내용

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

주요내용

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·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 제1항~제2항, 제22조의2 제1항제2호 (KGS AC417),(KGS AC418)

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(육군 종합보급창)
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(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)

기간 2년

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(실증 1대, 예비 1대)

조건

□ (안전성 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□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· 준수

□ (안전위원회 구성 · 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)**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**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** 이를 적용하여 **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, 용량 179L 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**

※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- 용기의 제조등록, 제조·검사 기준은 KGS AC421(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·검토 요청

확인서-803-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3-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현대로템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609-81-37486
	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88		
	대표자 이용배		

확인내용

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

주요내용

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·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 제1항~제2항, 제22조의2 제1항제2호 (KGS AC417),(KGS AC418)

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(육군 종합보급창)
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(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)

기간 2년

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(실증 1대, 예비 1대)

조건

□ (안전성 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□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· 준수

□ (안전위원회 구성 · 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)**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**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** 이를 적용하여 **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, 용량 179L 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**

※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- 용기의 제조등록, 제조·검사 기준은 KGS AC421(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·검토 요청

확인서-803-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3-3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덕산에테르씨티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69-87-01819
	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7로 113		
	대표자 위호선, 이수훈		

확인내용

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

주요내용

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·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 제1항~제2항, 제22조의2 제1항제2호 (KGS AC417),(KGS AC418)

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(육군 종합보급창)
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(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)

기간 2년

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(실증 1대, 예비 1대)

조건

□ (안전성 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□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· 준수

□ (안전위원회 구성 · 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)**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**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** 이를 적용하여 **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, 용량 179L 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**

※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- 용기의 제조등록, 제조·검사 기준은 KGS AC421(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·검토 요청

확인서-803-4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3-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기아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9-81-02316
	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		
	대표자 송호성, 최준영		

확인내용

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

주요내용

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·안전성 검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 제1항~제2항, 제22조의2 제1항제2호 (KGS AC417),(KGS AC418)

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(육군 종합보급창)
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(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)

기간 2년

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(실증 1대, 예비 1대)

조건

□ (안전성 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□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· 준수

□ (안전위원회 구성 · 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)**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**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** 이를 적용하여 **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, 용량 179L 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**

※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「고압가스법」에 따른 등록,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

- 용기의 제조등록, 제조·검사 기준은 KGS AC421(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·검토 요청

확인서-804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38-81-08704
	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, 1층(봉산동)		
	대표자 조용돈		

확인내용

명칭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

주요내용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, 별표5

구역 ①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290-46
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89번지 일원

기간 2년

규모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기체 수소충전소 2곳

조건

○ **(종합)**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기존 철도와의 거리 대신 저장설비·처리설비·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에서 철도 '본선'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형태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구축을 허용
※ 현재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개정 추진 중

○ **(안전관리계획)** 사업자는 **자체 안전성 평가**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**시설 설계, 자체 안전관리계획** 수립 및 준수

- **(안전성 평가)** 사업자는 수소연료충전시설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**자체 안전성 평가*** 실시

 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- **(안전관리계획)**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, **자체 안전관리계획*** 수립 및 준수

 *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(안)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,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	○ **(타법준수)** 동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**다른 법령에 따라**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**해당 법령을 준수** ○ **(자료제공 협조)** 실증과 연계한 **제도화 추진을 위해**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**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** **공통조건**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**공통사항**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05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5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Mt.H콘트롤밸브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603-81-33920
	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6(송정동)		
	대표자 김재규		

확인내용

명칭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

주요내용

극저온(-253℃) 상태의 액화수소를 이송·저장하는 시스템의 핵심 제어기기로 사용되는 밸브 4종 실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액화수소용 밸브의 제조·검사 관련 기준 및 규격의 부재로 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불가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조, 제5조, 제17조,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(KGS AA317), (KGS AA319)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 제4호 [별표12]

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6

기간 2년

규모 안전밸브, 긴급차단밸브, 유량제어밸브, 역류방지밸브 각 5개

조건

□ (관리체계)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,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,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

□ 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

□ (안전위원회 구성 · 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□ (허가 및 검사)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·제품에 대해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

□ (타법준수)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□ 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**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(실증특례)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사업자는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** 이를 적용하여 **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의 관리체계 준수하는 등 안전확보를 조건으로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을 허용**

○ **(관리체계)**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**안전관리계획**을 **마련**하고 이를 **이행,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, 검사기관이 검사**하는 **안전관리체계 구축**

① **(사업자)**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「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」을 반영한 **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이행**

② **(안전위원회) 사업자**는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안전성 검증***

*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

③ **(검사기관) 액화수소 실증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** 실시

<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>

절차	실증안전기준	안전성평가	안전관리계획	안전관리계획 검증(검토)	안전관리계획 승인	허가(검사)
주체	가스안전공사	사업자	사업자	안전위원회 (가스안전공사)	산업부	지자체 (가스안전공사)

○ **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** 안전성평가*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**자체 안전관리계획**** 수립 및 준수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**안전성 평가 준용**

**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'**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**'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**안전관리방안을 포함**

※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**안전관리규정 준용**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**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**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(실증 前)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(안) 적정 여부 등 검토
- (실증 中)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 검토

※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**(허가 및 검사) 사업자는** 액화수소 실증 시설·제품에 대해 **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**에 따른 **인허가 및 검사*** 등을 받아야 함

* **(시설)** 기술검토, 사업허가, 시설검사, 안전관리자 선임, 사업개시 신고 등
(제품) 국내·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, 제품검사 등

○ **(타법준수)**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**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** 등이 **다른 법령*에 따라**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**해당 법령을 준수**

* 수소법, 산업안전보건법,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

○ **(자료제공 협조)** 실증과 연계한 **제도화 추진을 위해**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**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**

확인서-806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6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바이오프랜즈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92-86-00453
	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, 512호		
	대표자 조원준		

확인내용

명칭 DC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개발과 실증

주요내용

탄화수소(메탄, LPG)를 DC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수소추출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실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재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, 제44조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2조, 제26조, 제39조

구역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-111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648-6

기간 2년

규모 DC플라즈마 방식을 활용한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

조건

□ (안전성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

□ 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

□ (자체검사)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□ 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□ (타법준수)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□ 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검토의견)**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**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(실증특례)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**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**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*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**

* 다만, 실증제품이 연구·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, 실증 후 사용·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, 이 경우 부대조건 중 "자체검사"를 추가로 이행할 것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유사 안전기준인 **KGS AH171**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**을 준용**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**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*를 준수**

* 법 제36조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, 제44조(제품검사), 제51조(보험가입) 등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자체검사*)** 사업자는 **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**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*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 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·승인 요청

○ **(타법준수)**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**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

○ **(자료제공 협조)** 실증과 연계한 **제도화 추진을 위해**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**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**

확인서-807-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7-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
신청인	이름(회사명)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04-82-04565
	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-28	
	대표자 김선용	

확인내용

명칭 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

주요내용

하이브리드 메탄을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의 성능·안전성 실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재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, 제44조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2조, 제26조, 제39조

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로 37 (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기술연구소)

기간 2년

규모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

조건

□ (안전성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

□ 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

□ (자체검사)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□ 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□ (타법준수)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□ 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검토의견)**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**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(실증특례)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**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**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*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**

* 다만, 실증제품이 연구·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, 실증 후 사용·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, 이 경우 부대조건 중 "자체검사"를 추가로 이행할 것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유사 안전기준인 **KGS AH171**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**을 준용**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**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*를 준수**

* 법 제36조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, 제44조(제품검사), 제51조(보험가입) 등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자체검사*)** 사업자는 **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**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*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 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·승인 요청

○ **(타법준수)**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**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

○ **(자료제공 협조)** 실증과 연계한 **제도화 추진을 위해**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**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**

확인서-807-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7-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752-82-00320
	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-148		
	대표자 오영국		

확인내용

명칭 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

주요내용

하이브리드 메탄을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의 성능·안전성 실증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재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, 제44조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2조, 제26조, 제39조

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로 37 (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기술연구소)

기간 2년

규모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

조건

□ (안전성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□ (실증안전기준)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

□ 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

□ (자체검사)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□ 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□ (타법준수)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□ 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
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

□ **(검토의견)**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**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(실증특례)를 인정

⇨ **(특례 부여내용)**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**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**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**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*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**

* 다만, 실증제품이 연구·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, 실증 후 사용·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, 이 경우 부대조건 중 "자체검사"를 추가로 이행할 것

○ **(안전성 평가*)** 사업 운영의 **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**(해소) **방안 도출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
○ **(실증안전기준)** 유사 안전기준인 **KGS AH171**(수소추출설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**을 준용**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**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*를 준수**

* 법 제36조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, 제44조(제품검사), 제51조(보험가입) 등

○ **(안전관리계획*)**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**

*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

○ **(자체검사*)** 사업자는 **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**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*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**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** 사업자는 **산·학·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자체 안전위원회**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**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**

<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>

- **(실증 前)** 안전성 평가 결과,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
- **(실증 中)**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- **(실증 後)**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
* 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·승인 요청

○ **(타법준수)**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**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**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

○ **(자료제공 협조)** 실증과 연계한 **제도화 추진을 위해**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**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**

확인서-808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8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엠에스바이오텍(주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03-81-26761
	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산길 25		
	대표자 주동관		

확인내용

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

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·판매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제6호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[별표4]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1],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[별표14]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8조 제1항 제3호

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 제4조 및 제5조, 식품등의 표시기준 II.공통표시기준

구역 [생산] 신청기업(음성) / [판매] 고객사 유통망(온/오프라인)

기간 2년

규모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개 제품

조건

○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·판매와 관련한 안전성·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

-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(GMP), 일반식품(축산물가공품)은 식품(축산물)제조가공업소(HACCP)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
-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
 *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
- 식약처가 제공하는 '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·판매 지침'을 준수할 것
 * 제품화 범위, 영업종류, 시설 및 위생기준, 사업자 준수사항, 품목제조신고(보고), 자가품질검사, 이력추적관리, 표시·광고 및 심의,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
-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·구획하거나, 구분·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
-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·후 세척·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

○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09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09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큐써트코리아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15-81-39783
	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, 402-제이681호(대치동, H타워)		
	대표자 양경희		

확인내용

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

주요내용 국내(HACCP)/해외(GFSI)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·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(HACCP 조사·평가 면제) 실증

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15조

구역 전국

기간 2년

규모 약 50개 업체 내외

조건

<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>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(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)의 GFSI 인증 규격[1]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·사후관리 결과[2]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

 1) 국제식품안전협회(GFSI,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) 규격: FSSC 22000, BRCGS, IFS, SQF

 2) 인증업체명(대표자, 소재지), 인증현황(품목, 업종 등),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(적합,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) 식약처 보고 의무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(보완)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, 보고 요구, 출입·현장조사,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(기관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GFSI 규격범위, 인정기관 변경)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0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0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로이드인증원(주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0-81-35412
	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, 2층 남산트라팰리스(남대문로 5가, T타워)		
	대표자 이일형		

확인내용

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

주요내용 국내(HACCP)/해외(GFSI)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·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(HACCP 조사·평가 면제) 실증

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15조

구역 전국

기간 2년

규모 약 109개 업체 내외

조건

<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>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(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)의 GFSI 인증 규격[1]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·사후관리 결과[2]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

 1) 국제식품안전협회(GFSI,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) 규격: FSSC 22000, BRCGS, IFS, SQF

 2) 인증업체명(대표자, 소재지), 인증현황(품목, 업종 등),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(적합,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) 식약처 보고 의무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(보완)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, 보고 요구, 출입·현장조사,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(기관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GFSI 규격범위, 인정기관 변경)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04-81-44779
	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, 8층(인사동, 태화빌딩)		
	대표자 임성환		

확인내용

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

주요내용 국내(HACCP)/해외(GFSI)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·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(HACCP 조사·평가 면제) 실증

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15조

구역 전국

기간 2년

규모 약 80개 업체 내외

조건

<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>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(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)의 GFSI 인증 규격[1]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·사후관리 결과[2]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

 1) 국제식품안전협회(GFSI,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) 규격: FSSC 22000, BRCGS, IFS, SQF

 2) 인증업체명(대표자, 소재지), 인증현황(품목, 업종 등),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(적합,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) 식약처 보고 의무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(보완)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, 보고 요구, 출입·현장조사,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(기관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GFSI 규격범위, 인정기관 변경)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앤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617-81-81891
	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, 314호, 315호 (성수동2가,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)		
	대표자 조티 바신		

확인내용

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

주요내용 국내(HACCP)/해외(GFSI)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·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(HACCP 조사·평가 면제) 실증

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15조

구역 전국

기간 2년

규모 약 120개 업체 내외

조건

<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>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(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)의 GFSI 인증 규격[1]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·사후관리 결과[2]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

 1) 국제식품안전협회(GFSI,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) 규격: FSSC 22000, BRCGS, IFS, SQF

 2) 인증업체명(대표자, 소재지), 인증현황(품목, 업종 등),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(적합,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) 식약처 보고 의무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(보완)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, 보고 요구, 출입·현장조사,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(기관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GFSI 규격범위, 인정기관 변경)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3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(주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04-81-28783
	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(성수동2가, 아주디지털타워 1층)		
	대표자 김주용		

확인내용

명칭: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

주요내용: 국내(HACCP)/해외(GFSI)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·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(HACCP 조사·평가 면제) 실증

유효기간: 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: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15조

구역: 전국

기간: 2년

규모: 약 61개 업체 내외

조건

<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>
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(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)의 GFSI 인증 규격[1]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·사후관리 결과[2]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
 1) 국제식품안전협회(GFSI,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) 규격: FSSC 22000, BRCGS, IFS, SQF
 2) 인증업체명(대표자, 소재지), 인증현황(품목, 업종 등),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(적합,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) 식약처 보고 의무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(보완)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, 보고 요구, 출입·현장조사,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(기관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GFSI 규격범위, 인정기관 변경)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ㅇ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4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엠에프지코리아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261-81-16391
	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6, 지하 1,2층(논현동, 곤비)		
	대표자 윤다예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·판매 서비스

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음료(사료)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를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사료관리법 제8조, 제12조, 제13조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

구역

경산북도 경산시 옥산로 227, 지상 2층 '매드포갈릭 스타필드 경산점'
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-2 스타필드빌리지 1층 '매드포갈릭 스타필드 파주점'
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30-39, L2층, '매드포갈릭 스타필드 안성점'

기간 2년

규모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경산점,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파주운정점,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안성점 총 3곳

조건

☐ **농림축산식품부 검토의견 : 수용**

○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용 메뉴를 제공하여 **이용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취지에 공감**

○ 통상적으로 사료 제조(가공 포함)를 위해선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

- 「사료관리법」 및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**시설기준, 제조공정, 성분 등을 준수할 필요**

○ 엠에프지코리아는 사료로 성분등록된 완제품을 제조(개봉·가열)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

- **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(주의사항 등) 등을 준수**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**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**를 **면제**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
 * 단, 펫밀크에 캐롭파우더를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수용
- 사료 성분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매장 내에 **안내문 등의 형태로 게시**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

○ **메뉴 추가·변경**되거나 **제공방식의 변경**이 있는 경우 **재승인 필요**

☐ **식약처 검토의견 : 조건부 수용**

○ 신청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**「사료관리법」상 사료에 해당하는 강아지 스테이크(혼합성 단미사료), 펫밀크(액상형 사료) 등 제품을 즉석 조리(단순가열, 휘핑)**하여 반려동물 전용 메뉴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됨

○ 사람이 섭취하는 **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** 동물 전용인 **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**

- 음료 등 식품(사람용)에 **사료(동물용)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**

	○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**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**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**조리대, 기구,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**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**원료 분리 보관**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**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** ④ 조리 방법에 따라 **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*** *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,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**'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' 준수** **공통조건**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**공통사항**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5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5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삼식당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73-202143
	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로 11, 1층(지축동)		
	대표자 이승열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주요내용

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 출입하여 식·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, 별표14

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로 11, 1층(지축동)

기간 2년

규모 삼식당 1개소

조건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를 하지 않은 업체는 **신고관청에 영업신고**

○ 식약처가 제시하는 **'안전관리 가이드라인' 준수**

* '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

① **[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]** 개,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(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)

② **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** 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③ **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**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·관리

④ **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**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 등 조치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○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○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6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6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금수연남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68-78-00474
	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9길 7(2층 연남동)		
	대표자 이유주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주요내용

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 출입하여 식·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, 별표14

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9길 7(2층 연남동)

기간 2년

규모 금수연남 1개소

조건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를 하지 않은 업체는 **신고관청에 영업신고**

○ 식약처가 제시하는 **'안전관리 가이드라인' 준수**

* '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

① **[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]** 개,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(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)

② **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** 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③ **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**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·관리

④ **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**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 등 조치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○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○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

	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7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7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삼청동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233-25-01956
	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 45(101호 구래동)		
	대표자 김은미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주요내용

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 출입하여 식·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, 별표14

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 45(101호 구래동)

기간 2년

규모 삼청동 1개소

조건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를 하지 않은 업체는 **신고관청에 영업신고**

○ 식약처가 제시하는 **'안전관리 가이드라인' 준수**
* '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

① **[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]** 개,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(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)

② **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** 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③ **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**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·관리

④ **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**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 등 조치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○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○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8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8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하삼동 해운대아이파크점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70-85-02850
	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(C1동 1층 117호 우동, 해운대아이파크)		
	대표자 박성준, 한지혜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주요내용

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 출입하여 식·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, 별표14

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(C1동 1층 117호 우동, 해운대아이파크)

기간 2년

규모 하삼동커피 해운대아이파크점 1개소

조건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를 하지 않은 업체는 **신고관청에 영업신고**

○ 식약처가 제시하는 **'안전관리 가이드라인' 준수**
* '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

① **[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]** 개,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(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)

② **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** 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③ **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**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·관리

④ **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**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 등 조치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○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○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19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19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파비에앤카페파우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250-39-01211
	주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 39, 210호(목감동, 목감 시티프라자)		
	대표자 박경숙		

확인내용

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주요내용

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 출입하여 식·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, 별표14

구역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 39, 210호(목감동, 목감 시티프라자)

기간 2년

규모 파비에앤카페파우 1개소

조건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신고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를 하지 않은 업체는 **신고관청에 영업신고**

○ 식약처가 제시하는 **'안전관리 가이드라인' 준수**

* '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

① **[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]** 개,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(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)

② **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** 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③ **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**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·관리

④ **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**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 등 조치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○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○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0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0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리안헤어블랙압구정로데오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556-19-02240
	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5 (신사동) 3층		
	대표자 이수민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5 (신사동) 중 일부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1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1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머즈헤어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81-16-02257
	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56 (예천동) 2층		
	대표자 한영은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56, 2층(예천동, 신우빌딩)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2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2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미랑컬헤어 상동점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30-42-78885
	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-9 부천상동수석프라자 202호		
	대표자 김흥수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-9 부천상동수석프라자 202호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3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비글린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377-86-03615
	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4, 3층(서교동, 엠제퍼스트홍대)		
	대표자 이웅장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4, 3층(서교동, 엠제퍼스트홍대)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4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에이치와이유니버스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556-88-03219
	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2 (신사동) 2층		
	대표자 김영주		

확인내용

명칭: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2 (신사동) 2층

기간: 2년

규모: 공유미용실 3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5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5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오렌지헤어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239-37-00375
	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66, 2층		
	대표자 고종현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Ⅰ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66, 2층
(*26년 1월 사업장 이전 예정 :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로 102, 리움오피스텔 1층)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6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6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더얼론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05-86-03478
	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(만촌동, 만촌역 태왕디아너스) 304동 119호		
	대표자 최보필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(만촌동, 만촌역 태왕디아너스) 304동 119호
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04, 2층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2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7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7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피27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87-88-00900
	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9-1, 3층(재송동)		
	대표자 신하균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Ⅰ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1차년도 : 부산시 해운대 소재 매장 1곳 예정
2차년도 : 부산시 해운대 소재 매장 1곳, 서울시 강남 소재 매장 1곳, 경기도 소재 매장 1곳 예정

기간 2년

규모 공유미용실 3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확인서-828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28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글림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597-87-02503
	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12-3 정예빌딩 3층		
	대표자 허성해		

확인내용

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

주요내용

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,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

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12-3 정예빌딩 3층

기간 2년

규모 [1차년도] 부산시 5개소, 경상도 5개소
[2차년도] 부산시 10개소, 경상도 10개소

조건

① **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**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 **(공동책임)**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
③ **(영업신고)**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**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**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

④ **(가이드라인)**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허가서-59호

임시허가서

제59호		허가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이진뷰티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644-87-00626
	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36 (중동)		
	대표자 조은임		

임시허가 내용

명칭: 공유미용실 서비스

유효기간

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

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

주요내용

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(미용사)가 입주해 공용시설(샴푸실, 열펌 기계 등) 등을 공유

조건

- 안전한 공유미용실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자체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(관리기준) 마련·제출 및 실증 특례기간 동안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
- 실증특례 부여시 조건 유지를 전제함

①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
②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

③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, 미이행 시 임시허가 취소

공통조건
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공통사항
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,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허가서-60-1호

임시허가서

제60-1호		허가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LG전자(주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07-86-14075
	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(여의도동)		
	대표자 류재철		
임시허가 내용	명칭 상업용 CO2 세탁기		
	유효기간 2026. 1. 26. ~ 2028. 1. 25.		
	주요내용 액체 CO2(이산화탄소)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		
	조건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및 아래의 부대조건(첨부 세부 부대조건 포함)을 준수 - (세탁기 제품) 일정한 설계에 따라 제조됨에 따라 고압가스 “제품(특정설비)”으로 구분하여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* 준수 * 특정설비 제조등록, 제품검사, 안전관리자 선임, 안전관리규정, 보험가입 등 - (세탁기 운영) 세탁기 설치·운영 시설은 완화된 “일반제조시설”로 구분하여, 완화된 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* 준수 * 간소화된 시설기준(가스누출경보기 설치, 배기덕트 설치 등) 적용, 일반제조시설 허가, 안전관리자 선임(자격 완화 등), 시설검사, 안전관리규정, 보험가입 등		
	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	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,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**임시허가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**

□ **(제품제조시설)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등록, 제조시설 및 제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(아래 참조)를 준수하여야 함

구분		특정설비 제조등록·제품제조(제조사_LG전자)	대상기관
제조기준		・사업자는 임시허가를 위한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, 산업부
기술검토		・사업자는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
제조등록		・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등록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조등록 신청을 할 것 ※ 허가관청은 제조등록증의 특정설비 품목란에 "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"로 기재하여 교부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완성검사		・제조시설 설치 후, 임시허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
보험가입		・특정설비 제조자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	사업자
안전관리규정		・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,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	사업자→ 공사, 시·군·구청
안전관리자		・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사업개시 신고		・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제품검사	**설계**	・생산제품 모델별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	공사
	생산	・모든 생산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것	공사

□ **(일반제조시설)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인·허가,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및 다음의 추가 안전기준을 준수

구분		완화된 일반제조시설(설치·사용자_의식주컴퍼니)	대상기관
시설기준	사고예방설비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(다만, 아래의 사고예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는 적용 제외) <사고예방설비 : 이산화탄소 검지기, 강제환기설비, 방출관(덕트) 설치>	사업자
기술검토		·사업자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을 것	사업자→공사
허가		·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허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할 것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완성검사		·시설 설치 후,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	공사
보험가입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	사업자
안전관리규정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,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	사업자→공사, 시·군·구청
안전관리자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. 다만, 처리능력이 60 ㎥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은 선임 면제 ※ 허가관청은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"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"를 "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"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안전교육		·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"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"을 이수하고, 안전관리자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LG전자의 자체 안전교육(안전 운전요령, 점검방법, 긴급 시 조치방법 등 포함)을 수강(LG전자는 교육 후 수강확인서 발급)할 것 ※ 향후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신설 시, 해당 특별교육을 재이수	사업자→공사, LG전자
사업개시 신고		·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정기검사 등		·사업자는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율검사를 받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를 받을 것	사업자→공사

허가서-60-2호

임시허가서

제60-2호		허가연월일	2025년 12월 29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(주)의식주컴퍼니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561-87-00957
	주소	경기도 군포시 농심로72번길 3 (당정동, 런드리고 글로벌 캠퍼스)	
	대표자	조성우	
임시허가 내용	명칭	상업용 CO2 세탁기	
	유효기간	2026. 1. 26. ~ 2028. 1. 25.	
	주요내용 액체 CO2(이산화탄소)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		
	조건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및 아래의 부대조건(제품제조시설, 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세부 부대조건 포함)을 준수 - (세탁기 제품) 일정한 설계에 따라 제조됨에 따라 고압가스 “제품(특정설비)”으로 구분하여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* 준수 * 특정설비 제조등록, 제품검사, 안전관리자 선임, 안전관리규정, 보험가입 등 - (세탁기 운영) 세탁기 설치·운영 시설은 완화된 “일반제조시설”로 구분하여, 완화된 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* 준수 * 간소화된 시설기준(가스누출경보기 설치, 배기덕트 설치 등) 적용, 일반제조시설 허가, 안전관리자 선임(자격 완화 등), 시설검사, 안전관리규정, 보험가입 등		
	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	
	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,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

붙임 **임시허가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**

□ **(제품제조시설)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등록, 제조시설 및 제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(아래 참조)를 준수하여야 함

구분		특정설비 제조등록·제품제조(제조사_LG전자)	대상기관
제조기준		·사업자는 임시허가를 위한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, 산업부
기술검토		·사업자는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
제조등록		·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등록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조등록 신청을 할 것 ※ 허가관청은 제조등록증의 특정설비 품목란에 "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"로 기재하여 교부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완성검사		·제조시설 설치 후, 임시허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	사업자→ 공사
보험가입		·특정설비 제조자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	사업자
안전관리규정		·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,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	사업자→ 공사, 시·군·구청
안전관리자		·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사업개시 신고		·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 시·군·구청
제품 검사	**설계**	·생산제품 모델별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	공사
	생산	·모든 생산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것	공사

□ **(일반제조시설)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인·허가,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및 다음의 추가 안전기준을 준수

구분		완화된 일반제조시설(설치·사용자_의식주컴퍼니)	대상기관
시설기준	사고예방설비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(다만, 아래의 사고예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는 적용 제외) <사고예방설비 : 이산화탄소 검지기, 강제환기설비, 방출관(덕트) 설치>	사업자
기술검토		·사업자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을 것	사업자→공사
허가		·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허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할 것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완성검사		·시설 설치 후,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	공사
보험가입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	사업자
안전관리규정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,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	사업자→공사, 시·군·구청
안전관리자		·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. 다만, 처리능력이 60 ㎥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은 선임 면제 ※ 허가관청은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"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"를 "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"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안전교육		·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"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"을 이수하고, 안전관리자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LG전자의 자체 안전교육(안전 운전요령, 점검방법, 긴급 시 조치방법 등 포함)을 수강(LG전자는 교육 후 수강확인서 발급)할 것 ※ 향후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신설 시, 해당 특별교육을 재이수	사업자→공사, LG전자
사업개시 신고		·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	사업자→시·군·구청
정기검사 등		·사업자는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율검사를 받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를 받을 것	사업자→공사